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의안 번호 113 제출년월일: 2015. 10. .

제 출 자:평창군수

1. 제안이유

O 법령에 근거 없는 규제사항을 개정하여 위법성을 해소하고 법에 합치하는 군정을 구현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○ 조례안 제13조제2항 삭제

- 상표사용 승인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·유통된 상품을 회수·폐기 하여야 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도록 하는 규정은 비록 상표 사용자에게 과실이 있더라도 행정청에게도 일정 부분 과실이 있을 수 있는데, 모든 손실을 사용자에게 감수하도록 하는 것으로 법률상 근거 없이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것이므로 삭제

3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별첨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: 해당기관 없음

라. 기 타:

- 1) 입법예고(2015. 09. 23. ~ 2015. 10. 13.) 결과 : 제출의견 없음.
- 2) 규제심사, 부패영향평가, 성별영향분석평가 : 원안 동의

평창군 조례 제 호

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평창군 상표권 관리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 제13조제2항을 삭제한다.

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13조(사용승인의 취소 등) ①	제13조(사용승인의 취소 등) ①
(생 략)	(현행과 같음)
② 상표사용자는 상표사용 승인	<u><</u> 삭 제>
이 취소되면 이미 제작・유통	
된 상품을 회수・폐기하여야	
하며 그에 따른 손실을 감수하	
<u> 여야 한다.</u>	

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

1. 비용발생 요인

- 비용발생 요인 없음

2. 미첨부 근거 규정

- 「 평창군 의안의 비용추계에 관한 조례 」제3조제5항제1호에 따라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천만원 미만이거나 한시적인 경비로서 총 1억원 미만인 경우에 해당함.

3. 미첨부 사유

- 조례 개정에 따른 비용 발생 없음.

4. 작성자

작 성 자	기획감사실장 김 진 영
연 락 처	(033)330-2206